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8. 30.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8. 16. 차해영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2024. 8. 19.

다. 상정일자: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8. 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남해석 의원】

가. 제안이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안 제4조)

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가. 제정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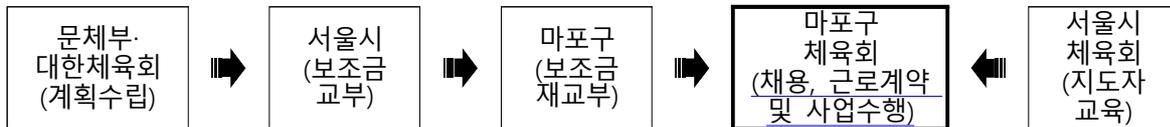
- 동 조례 제정안은 2024년 8월 16일 차해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생활체육지도자는 구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지도자로서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생활체육 지도자의 고용안정, 임금 등 처우개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제정¹⁾하려는 것으로 보임.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 정원(2024. 8. 기준) : 총 22명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소속/채용주체
계	22	21	1	
일 반	8	8	0	마포구 체육회
어르신	8	8	0	
장애인	6	5	1	마포구 장애인체육회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절차



○ 주요활동 내용

- 대면(현장)지도 1일 2개소 3회 이상(1회 40분 이상)
- * 실시간 쌍방향 지도는 대면(현장)지도 횟수(1일 3회 이상)에 포함 가능

- 2022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²⁾되어 인건비의 경우 기본급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기본급 50%와 자체 책정한 부가적 수당을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급여체계가 근무 연차 수에 비례하지 않고, 확실적인 보수체 계로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 인건비 실수령액이 일과 생활이 양립하기 힘든 낮은 보수로 인하여 이직률이 높아 생활체육 진흥에 어려움이 있음.

1)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광역 11, 기초 2)하였음.

2)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은 보장되었으며, 2022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계획 및 지침」에 의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임.

- 2024년도 생활체육지도자 1명 월 급여는 2,196천 원으로, 문체부와 시·자치구가 일정 비율(국고50, 시비25, 구비25)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며, 문체부에서 매년 단일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어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기본급이 동일한 실정임.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 체계

- 임금체계 : 문화체육관광부의 급여 책정, 자치단체(지방체육회)의 예산 범위내 급여 및 수당 추가 보조 가능 ▶ 급여 + α(처우개선비 등) * 경력인정 없음
- 2024년도 인건비 세부내역
 - 급여 ▶ 매년 문화체육부 장관 책정, 국비, 시·구비 각 50% 부담

(단위 : 원)

지원금(A=B+C) (국비, 시·구비)	급여(B)	사업자 부담금 (C)	근로자 부담금 (D)	예상실수령액 (B-D)
2,607,000	2,196,100	410,900	234,700	1,961,400

- 보조지원 : 각 지자체별 처우개선비 등 추가 보조 지원

- 최근 5년간 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조금(원)	2,274,000	2,414,000	2,436,000	2,470,100	2,544,000	2,607,000
지도자 급여(기본급)	1,919,000	2,039,000	2,055,000	2,082,000	2,142,200	2,196,100
법정부담금(개인부담제외)	355,000	375,000	381,000	388,100	401,800	410,900

- 생활체육지도자의 대표적인 업무는 ▲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지도, ▲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 관련 업무로 1일 8시간이 원칙이지만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주말의 경우 관내에서 개최되는 대회 및 행사로 인해 일주일 내내 근무가 이루어져도 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 직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체계에서 경력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신규 지도자와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지도자의 보수격차가 전혀 없고, 근속연수가 길어져도 임

금 인상률에 변동이 없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과도한 근무시간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음.

- 한편, 관내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³⁾에서도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 차등의 필요성(호봉제 도입 필요), ▲동일노동 동일업무를 함에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에 대한 처우 지침 필요성,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이 생활체육지도자 의견으로 제시되었음.
- 이처럼, 과중한 업무와 불안한 고용, 저임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조문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4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안 제5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안 제6조), 지원(안 제7조) 등을 규정하였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 규정은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체육” 및 “생활체육지도자”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2조제2호의 “생활체육지도자”⁴⁾는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간담회’ 개최: 마포구의회 주최/ 2024. 8. 16.

4)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로서, 이 중 마포구 체육회 및 마포구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배치된 사람을 의미함.

- 안 제3조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사업,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등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 처우개선 사업을 규정하였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와같이 검토한 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 등을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취지에 부합⁵⁾하며,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
- 다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단기간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체육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재정지원 기준 마련 등 생활체육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5)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도자 사기진작 및 지원방안 모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급여의 현실화와 예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획일적인 급여 기준 변경 및 호봉과 등급 체계의 도입 등도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에 지속적 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 타: 조례안 제2조제2호 생활체육지도자 정의 중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는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의 단순 오기로 보이는 바 위원장 일임 하에 처리함

□ **사업목적 및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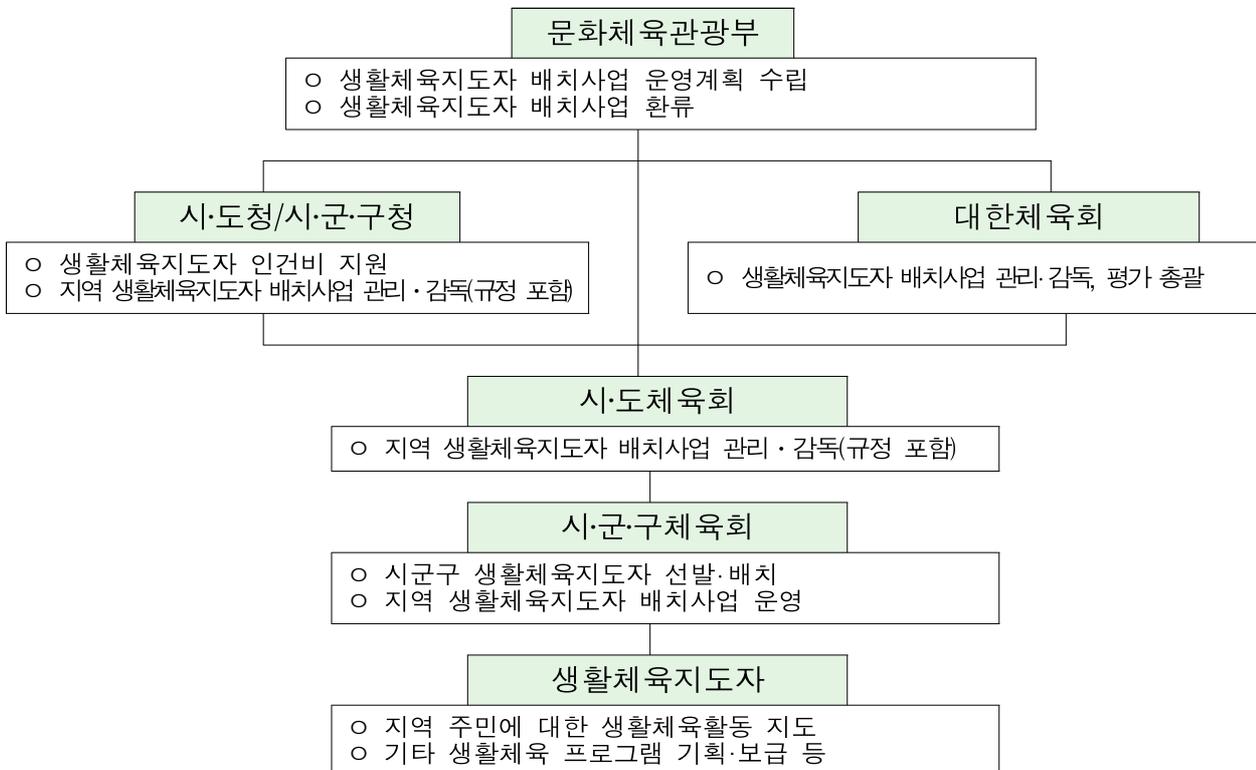
- 지역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활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시·군·구 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층, 체육인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사용범위), 동 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사업내용**

- (주요내용)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 (사업예산) 국고 44,523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44,410백만원)
* 세부내역 중 성과관리 인센티브는 지방비 매칭 없음(국고 100%)
- (사업기간) 2024년 1월~12월

□ **사업 추진 체계**



붙임 2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세출내역

1 총괄 내역

(단위 : 원)

지원금(A)	급여(B)	사업자 부담금(C)	근로자 부담금(D)	예상실수령액(B-D)
2,607,000	2,196,100	410,900	234,700	1,961,400

2 사업자 부담금 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법정부담금		비고
		근로자	사업자	
계	617,410	206,510	410,900	사업자부담금 410,900원 반영
국민연금	197,640	98,820	98,820	보수월액의 9%(개인 4.5%, 사용자 4.5%)
건강보험	155,700	77,850	77,850	보수월액의 7.09%(개인 3.545%, 사용자 3.545%)
장기요양보험	20,160	10,080	10,080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45,010	19,760	25,250	보수월액의 2.05%(개인 0.9%, 사용자 1.15%) ※ 사용자는 기업체 규모별(150명 미만)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보험료 0.25% 포함
산재보험	15,890	-	15,890	사용자전액부담, 보수월액의 0.724%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기준, 0.6% ※ 출퇴근재해요율 0.06% (23년 대비 0.04%인하됨) ※ 임금채권부담금 0.0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4% 포함
퇴직적립금	183,010	-	183,010	보수월액의 1/12

※ 실제 급여에 따라 지역별(개별) 법정부담금 계산이 상이할 수 있음

※ 고용보험 : 사용자 적용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산재보험 : 업종·사업장별로 상이,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조회 적용

3 근로자 부담금 내역

(단위 : 원)

근로자 부담금 (C=A+B)	세금(A)			법정부담금(B)			
	계	소득세	주민세	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234,700	28,190	25,630	2,560	206,510	98,820	87,930	19,760

※ 근로자 부담금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위 내역은 공제대상 가족 수 1인(본인 포함) 기준, 원천징수 세액 100% 적용 기준

붙임 3**타 자치단체 유사조례 목록**

구분	조례명	기관명	제·개정	시행일자
1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제정	2024. 3. 8.
2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경기도	제정	2022. 1. 6.
3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경상남도	일부개정	2023. 8. 3.
4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제정	2023. 12. 15.
5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일부개정	2023. 5. 17.
6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제정	2023. 7. 18.
7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일부개정	2024. 2. 26.
8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제정	2022. 10. 18.
9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충청북도	제정	2021. 8. 6.
10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제정	2024. 7. 17.
1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정	2024. 8. 2.
12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제정	2024. 2. 7.
13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제정	2024. 4. 8.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스포츠지도사
- 나. 건강운동관리사
-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마. 노인스포츠지도사